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 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위생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의 급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으로서 일반 대상자는 기본요금(요금표)의 15%, 의료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6%(본인일부부담금 100분 60감경 하는 자), 9%(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40감경하는 자), 기초수급자는 면제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한도초과) 이용은 전액 자기부담한다.

그 밖에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심야(오후 10시에~오전6시)의 가산 및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가산은 상기요금에 대하여 1회에 30%의 가산이 되어 청구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참고)

(서비스 이용료)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의 경우 2024. 01. 01~ 기준〉

가.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단위 : 원 / 회당)

분류	금액	분류	금액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에 대하여는 30%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 가산		

나.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단위 : 원 / 회당)

분 류	금액(원)
60분 미만(가정내)	38,140
60분 이상(가정내)	47,670

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대상자의 계약자의 계약해지와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3) 대상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4) 대상자의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서비스 제공시 건의사항,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6)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보호자)과 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갑-대상자, 을-기관, 병-보호자)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월 이용료 납부
-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획내용 준수
-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⑥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 ⑦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⑧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⑨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3. 이 외에 다음에 내용을 숙지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한다.

- 1)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2)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 3)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지

1. ‘갑’ (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 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급여계약서의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급여계약서의 제3조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급여계약서의 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 (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 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4) 기타 ‘갑’ 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 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급여계약서의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2) 급여계약서의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3) 급여계약서의 ‘갑이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4) ‘갑’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갑’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6) ‘갑’ 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약할 수 있다.
 - 1) “갑” 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 2) “을” 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이를 “갑” 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